

인천지방법원 2021. 7. 9 선고 2021가단205055 판결 [이득상환금 (시효중단 확인의 소)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6. 11.

판 결 선 고 2021. 7. 9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0. 12. 30. 선고 2010가소211225 이득상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남효정

별지